

BTL사업계획(강원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)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5. 11. 25 (금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5. 12. 1(목)
- 다. 상정일자 : 2005. 12. 21(수) 제125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4차 본회의

2. 제안이유

- 가. 우수한약 유통시설을 보건복지부로부터 BTL사업으로 확정받아 2006년 민간투자자로 하여 대행사업 추진 후 2008년부터 20년 동안 국·도비 및 군비로 시설투자비를 균등 상환하는 사업으로
- 나.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강원우수한약 유통시설의 위치와 규모는
 -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241-2번지외 16필지 9,600평의 규모로 조성되며,
 - 시설은 항온, 항습시설을 포함 2,800평임
- 나. 총소요사업비는
 - 부지매입 및 기본설계용역비 15억원(군비투자), 시설투자비 100억원(민간투자) 등 총 115억원으로
- 다. 상환계획은
 - 민간투자비 100억원을 포함 20년간 국비 100억원, 도비 52.5억원, 군비 52.5억원 등 총 210억원을 균등 상환할 계획이며
년도별 상환계획은 2008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총 10.5억원 (원금 5억원, 이자 5.5억원)임

4. 검討 결과

가. 본 BTL사업계획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8호에 따른

의무부담행위로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

○ 사업의 타당·적합성면에서 보면

- 우리군은 고랭지 중심의 한약재로 당귀를 비롯한 15종 이상의 고산지대 고품질 한약재를 생산하는 지역으로, 강원도 전체 한약재 재배농가 4,295호중 18%인 786농가가 622㏊에서 1,807톤을 생산하고 있으며
- 특히 당귀는 우리나라의 39%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으로, 수입개방과 고랭지 채소류 가격붕괴 등 대체작목 개발이 시급한 상황을 감안하면
- 적정한 시기에 사업계획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됨

○ 수익성면에서는

- 지금까지 저장, 보관 능력의 미비로 일시에 흥수 출하하게 됨에 따라 가격이 불안정하고
- 중간상인 등에 의한 포전거래로 안정적 소득을 기대할 수 없었으나,
- 향후 항온, 항습시설 설치로 농가의 흥수출하에 대비 유통 체계를 개선한 출하로 안정된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됨으로서 우리지역 한약재 재배농가에 직접적인 수익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,
- 특히 현재 저온저장고 시설을 임대사용에서 전문 집중시설에 양질의 상태로 유지·보관연중·판매하므로 유통에 원활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봄

○ 향후 예측되는 영향 및 전망

- 재배농가 수혜측면에서 보면
 - 도 전체 농가 중 재배농가 786호인 18.3%에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가고

- 특히 약초재배농가는 읍·면별로 분포되어 있으나, 대화에서부터 도암면 지역이 92%를 점하고 있고, 고랭지 대체유망작목으로 부상하고 있어 본 시설 유치시 한약재 재배농가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.
- 또한 주변여건 조성 측면에서 보면 우리군 생산물을 우선으로 하고, 인근 지역의 한약재에 대하여는 여유공간을 임대하여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고,
- 유통시설을 통한 지역주민 고용효과 창출 및 상권형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.

○ 예측되는 문제점은

- 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생산자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여야 하나,
- 본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완공된 사업장의 사례와 이에 대한 성패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,
- 이에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사업운영 규정을 마련중에 있음
- 이와 관련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나
 - 직접적인 재정투입없이 필요한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선택수단에 대한 제약이 따르지 않으나, 운영측면에서 볼 때 장차 발생하게 될 미래의 재정부담이 자치단체에 남게 되므로 향후 재정 악화를 예상

사업 집행시 다각적이고 충실한 검토와 자체운영 규정을 공증하는 등 우발적으로 있을 만일의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행·재정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-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예측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단계별로 충분히 검토 시행되어야 할 것임.

- 그 이유는 본 건 유치 후 단계별 추진절차 이행상 먼저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예산안,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함께 3건을 중첩되게 제출함으로 검토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의 오류를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상의 관심이 필요함

나. 국내 및 외국의 사례를 보면

- BTL방식은 적정수익률을 반영하여 계산된 확정임대료를 통하여 사전에 민간부분의 목표수익률을 보장함으로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점에 호응을 얻어
 - 해외의 경우 영국, 호주, 일본이 공공시설 건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
 - 우리나라는 종전 BTO 방식으로 17개분야에서 추진되어 오다가 올해 1월 민간투자법령을 개정 BTL사업으로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데 2005년도 BTL사업이 추진되는 문화관광부 사업을 보면
 - 문예회관, 도서관, 박물관, 미술관을 중심으로 영주시 종합문화 예술회관, 인천시립도서관, 대구 시립미술관, 파주시립역사 박물관 등이 있고,
 - 복합시설로는 강진 문화복지종합타운, 전주전통생활 문화프라자, 서귀포 종합문화센터 등이 금년 말 또는 2006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추진되고 있음.

다. 종합적인 검토 의견

- 사업의 타당성, 적합성, 수익성, 주민수혜도, 정부체제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보면 본 사업은 우리군에 적합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